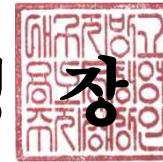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폐문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1. 19.

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민0옥	68.10.13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 (취업활동계획수립을 위한 기관방문 의무불이행 및 연락두절)	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	폐문	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우산로 *

4. 공고기간: 2024. 11. 19. ~ 2024. 12. 0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백서연(Tel 054-559-82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